

평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4. 30 평창군수(건설과장)
- 나. 회 부 일 자 : 2001. 6. 21
- 다. 상 정 일 자 : 2001. 6. 21 제86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특
(2001. 6. 2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건설과장 박현창)

가. 제안이유

-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 보전,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2규정에 따라 농촌용수의 종합이용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농촌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이용배분 및 수질관리 보전등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농촌용수 구역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안 제3조)
- 농촌용수의 오염방비를 위한 대책과 수질검사 실시(안제6조)
- 운영관리 위원회 구성운영(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태영)

- 가. 본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2 동법시행령 제21조 5의 규정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 보전·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의 종합이용 계획을 수립, 추진하므로서 농촌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이용배분 및 수질관리

· 보전등을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 5(조례의 제정) 시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 구역안의 농어촌 용수 구역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1. 농어촌 용수의 이용·배분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용수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용수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의 유지비용·관리비용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한 사항

나. 주요내용

(1) 정의

(가) 농촌용수구역 =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계획상의 구역별·수체별단위

(나) 농촌용수 :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

(2) 군수의 임무

(가) 농촌용수 구역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나) 농촌용수의 운영에 대한 장기·연차적 계획수립·운영·관리

(다) 농촌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구축

(라)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3) 농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 설치

(가) 자체 용수구역운영 관리위원회(용수구역개발·관리보존 사항)

(나) 평창군 용수구역운영 관리위원회(자체심의 내용 검토, 기타)

다. 기타 법령형식·절차·자구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 임 : 평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1부